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장학금규정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학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장학금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대부분 사문화되어 시대·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이 필요함. 특히, 법령 제정 이후 각종 장학사업이 대폭 확대된 상황을 감안하여 장학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이 공통으로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법」 폐지 반영 등 위임 법률 현행화하고,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 사항 명확화(안 제1조 및 안 제2조 개정)

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관련 특정 전공 우대, 구체적 선발 비율 등에 대한 규정을 공통적·포괄적 기준으로 정비(안 제 4조 및 안 5조 개정)

다. 상위 법률의 위임 사항(지급 방법)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신규 반영(안 제8조 개정)

라. 장학금 등의 지급과 수혜 관련 귀책 사유 발생 시, 기관 및 학생 대상으로 환수, 시정요구 등 제재 조치 근거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진행예정('26.5.26.~7.8.)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사전협의 완료('26.5.19.)

장학금규정 전부개정령안

장학금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학금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이하 ‘장학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 및 재학 중에 필요한 생활비(숙식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뜻한다.
2. “학비보조금”이란 장학금 외에 학생의 학업 장려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뜻한다.
3. “장학생”이란 장학금 등의 수혜대상으로 선정되어 지급 중에 있거나

지급 예정인 상태의 학생을 뜻한다.

제4조(지급 대상) 장학금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교육을 받는데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재 양성 및 학업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급 기준) ① 장학금 등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학업성적 및 능력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장학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또는 학년을 단위로 지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지급 범위) ① 장학금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정한다.

- ② 장학금 등의 지급 기간은 장학생의 수학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 (장학금 등의 신청) ① 장학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방법) 장학금 등은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적 중인 교육기관의 장 등이 대리하여 수령 할 수 있다.

제9조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장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장학금 등의 지급 목적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장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 등을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금 등의 지급 사유가 중도에 소멸된 경우
2. 장학금 등의 지급 범위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장학생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원 목적과 용도를 달리 하여 장학금 등을 사용한 경우

5.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위반 하여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한 경우

6. 장학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등의 환수 의무를 가진 사람(이하 ‘환수의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의무자가 사망·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환수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행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장학생이 소속된 교육기관 등을 포함 한다)에게 환수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정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교육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장학금 등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4. 반기 및 연차보고서 등의 작성·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장학사업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6.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출한도 제한대학
 7. 그 밖의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배하거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책사유가 있는 관계 교육기관이 제1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장학금 등 지원사업의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 등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장학금 등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9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교부된 장학금 등의 범위 내에서 교부된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 및 제

7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72